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2662
----------	-------

제출연월일 : 2025. 9. 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제2호 중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를 “제조장이나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등”이라 한다)로 반입된 경우 또는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등으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된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 대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①·② (생략)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절차 및 추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u>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u>	2. ----- ----- ----- ----- <u>제조장이나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등”이라 한다)로 반입된 경우 또는 「지방세법」 제63조</u>

3. · 4. (생 략)	<u>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등 으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 된 경우</u> 3. · 4. (현행과 같음)
---------------	---